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256
------	------

2024.12.17.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2024.12.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가. 제안이유

-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임기 만료 시점 도래와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위원회 관련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명칭을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인구정책 아젠다 발굴·정책화 역할을 강조하고자 함(안 제7조)
2. 위원회 자문 기능을 조항에 추가하여 시 인구정책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7조)
3. 이민·다문화 분야 신설, 청년·여성 분야 확대를 위하여 총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4. 위촉직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인구정책 관련 분야를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정수를 확대하여 서울시 인구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출됨.

2. 서울시 인구정책의 추진 현황

-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및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저출생·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고, 사망률이 출생률을 역전하는 등 인구감소가 현실화되자 2019년 4월, 9개 정책분야¹⁾를 대상으로 하는 범부처 차원의 인구정책 TF를 구성한 바 있음²⁾.
-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 역시 65세 이상이 서울시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인구문제의 종합적인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에 전담조직(인구변화대응팀)을 설치(2021.7.)하고, ▶인구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2021.12.30.)하였음.
-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는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구성(2022.12.12.)하여 현재까지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 고용, 재정, 복지, 교육, 산업, 국토, 국방, 금융, 지역

2) 인구정책TF는 출범 당시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설치되었으며 이후 인구위기대응TF로 명칭이 변경(2022.6.24.)되었으나 현재는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 업무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2023.6.19. 출범)에서 시행되고 있음.

으로 4대 정책방향 및 11대 전략,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5년(2024~2028)간 총 1조 9,314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2024.6.14)하였음.

< 서울시 인구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분 야	계	연도별 예산액				
		2024	2025	2026	2027	2028
투자예산(안)	1,931,429	281,117	380,370	419,043	442,802	408,097
1.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91,650	13,527	17,209	18,835	20,677	21,402
① 정년제도 개선 및 계속고용 지원	17,605	3,364	3,441	3,520	3,600	3,680
②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향상	41,845	6,163	7,268	9,015	9,377	10,022
③ 첨단기술 활용 노동인력 부족 대응	32,200	4,000	6,500	6,300	7,700	7,700
2. 콤팩트 도시 조성	2,491	1,091	200	200	200	800
① 도시공간 유연화 및 재구조화	2,491	1,091	200	200	200	800
② 광역권 생활 편의 증진	-	-	-	-	-	-
3. 건강활력 생활 보장	555,551	102,078	128,281	107,455	107,306	110,431
① 고립·단절 없는 일상 지원	233,151	39,922	41,120	62,821	43,978	45,310
②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259,959	52,035	75,311	31,694	49,838	51,081
③ 주거복지 지원체제 개선	62,441	10,121	11,850	12,940	13,490	14,040
4. 탄생응원 지원	1,281,737	164,421	234,680	292,553	314,619	275,464
① 가정일 양립 문화 확산	33,690	2,550	5,190	8,650	8,650	8,650
② 부담·공백 없는 양육환경 조성	14,984	-	3,746	3,746	3,746	3,746
③ 결혼·출산 진입 장벽 완화	1,233,063	161,871	225,744	280,157	302,223	263,068

- 이외에도 서울시는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부서 자체평가, 전문가 평가 등을 실시(2022.10.~2023.10.)하였으나 용역을 통해 진행되는 평가의 연속성과 전문성의 한계,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실효성 부족 등이 지적됨에 따라 서울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2025년 2월에 인구영향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3. 위원회 관련 규정의 정비

가. 위원회 명칭 변경 등(안 제7조)

- 안 제7조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2024.12.)인 인구변화대응위원회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기에 앞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자문기능을 추가하며, 미반영된 약칭을 정비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7조(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하기</u> 위해 서울특별시 <u>인구변화대응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u>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u> 2. ~ 5. (생략)	제7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자문하기</u> 위해 서울특별시 <u>인구정책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u> 2. ~ 5. (생략)

- 동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및 그에 따른 기본계획의 명칭과 위원회의 명칭을 일치시킴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인구정책 아젠다 발굴·정책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또한 자문기능의 추가는 동 위원회가 인구변화대응 세부 전략 과제 등의 인구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동 조례에는 심의기능만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여 동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미반영된 약칭의 정비는 동 조례 제5조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약칭하도록 하였으나 동 조례 제7조에는 이러한 약칭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한 것으로, 개정안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위원회 구성 및 정수 확대 등(안 제8조)

- 안 제8조는 저출생·고령화 및 도시공간계획 분야 전문가, 청년, 이민·다문화 분야를 위촉위원의 자격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위원 정수를 종전의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생략) 1. ~ 3. (생략) 4. <u>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u> <신설> ④·⑤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생략) 1. ~ 3. (생략) 4. <u>저출생·고령화, 도시공간계획 등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5. <u>그 밖에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 외국인 주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④·⑤ (현행과 같음)

- 서울시는 이러한 위촉위원의 자격 및 정수 확대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정수를 종전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되, 논의 안건에 따라 소관 국·과장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경제·고용, 복지·돌봄 분야 위촉위원은 각각 1명씩, 청년·여성 및 이민·다문화 분야 위촉위원은 각각 3명씩 증원할 예정임.

<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편(안) >

현행	개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인구변화대응위원회 ◦ 당연직(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u>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미래청년기획단장</u> ◦ 위촉직(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사회(2), 경제·고용(2), 복지·돌봄(2), 도시·주택(2), <u>청년(1), 시의원(1)</u>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u>인구정책위원회</u> ◦ 당연직(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위촉직(1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사회(2), 경제·고용(3), 복지·돌봄(3), 도시·주택(2), <u>청년·여성(3), 이민·다문화(3), 시의원(1)</u> 등

- 이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인구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나, 지난 2년간 동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총 6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원 정수의 확대가 반드시 위원회 운영의 양적·질적 효율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다소 의문임.

<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최실적 >

◦ 2023년 추진실적 : 총 4회(정기회의 2회, 수시회의 2회)

연번	구분	방법	개최일자	안건명	참석현황	
					참석대상	참석인원
1	정기회의	출석	'23.1.3.	인구변화 대응 방향 및 전략, 세부 전략과제 논의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당연직 5명 위촉직 8명
2	수시회의	서면	'23.1.4.~6.	인구변화대응 세부 전략 과제 수정·보완 자문	위촉직 9명	위촉직 8명
3	수시회의	출석	'23.5.11.	인구변화 대응방향 및 전략사항 보완 자문	위촉직 3명	위촉직 3명
4	정기회의	서면	'23.10.30~11.3	이민정책 전환 필요성 대두 관련 자문	위촉직 9명	위촉직 8명

◦ 2024년 추진실적 : 총 2회(정기회의 2회)

연번	구분	방법	개최일자	안건명	참석현황	
					참석대상	참석인원
1	정기회의	출석	'24. 5.14.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안) 보고·심의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
2	정기회의	출석	'24.10.29.	인구정책연구과제 추진현황 보고 등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당연직 5명 위촉직 8명

다. 위원장 직무대행 및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 안 제9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부재 또는 유고시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10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의 인용 조례를 명시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생략) <신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략) ⑥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 현행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안 제9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 위원회 운영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임.
- 그러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도 개최해야 할 만큼 급박한 현안을 동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개정 조문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56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임기 만료 시점 도래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위원회 관련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명칭을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인구정책 아젠다 발굴·정책화 역할 강조하고자 함(안 제7조)
- 위원회 자문 기능을 조항에 추가하여 시 인구정책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7조)
- 이민·다문화 분야 신설, 청년·여성 분야 확대를 위하여 총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1항)
- 위촉직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인구정책 관련 분야를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3항제4호 및 제5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8. 22. ~ 9. 11.)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임보형 (☎ 2133-6642)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를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인구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을 “기본계획 및”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출생·고령화, 도시공간계획 등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 외국인 주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6항 중 “해당안건”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해당안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하기</u> 위해 서울특별시 <u>인구변화대응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 <u>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u></p> <p>2. ~ 5.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1. ~ 3. (생략)</p> <p>4. <u>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u><신 설></u></p> <p>④ · ⑤ (생략)</p>	<p>제7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 ----- ----- <u>심의·자문하기</u> --- ----- <u>인구정책위원회</u>----- ----- -.</p> <p>1. <u>기본계획 및</u> -----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u>20명</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저출생·고령화, 도시공간계획 등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5. <u>그 밖에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 외국인 주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생략)

<신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략)

⑥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해당안건---

⑦·⑧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은 위원회 자문 기능 추가, 위원회 위원 수 확대, 위원 구성 다양화 등에 관한 내용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임보형 주무관(☎ 2133-6642)